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810

발의연월일: 2021. 3. 15.

발 의 자:김원이・이동주・이해식

진성준 · 최혜영 · 이정문

기동민ㆍ허 영ㆍ윤미향

윤영덕 • 고용진 • 위성곤

박홍근 · 강훈식 · 김경협

서영석 · 김경만의원

(17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의료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발열과 근육통 등 항체 형성을 위한 면역반응으로 인해 휴식·휴가 등이 필 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음. 그러나 현행법상에는 감염병 백신 접 종한 자의 유급휴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임.

이에 근로자가 감염병 백신을 접종할 경우, 사업주로 하여금 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외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,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 백신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(안 제41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1조의2제1항 전단 중 "격리되는"을 "격리되거나 예방접종을 받는"으로, "격리기간"을 "격리기간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(예방접종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)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업주의 협조의무에 관한 적용례) 제4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인하여 감염병백신 접종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1조의2(사업주의 협조의무) ①	제41조의2(사업주의 협조의무) ①
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	
라 입원 또는 <u>격리되는</u> 경우	
「근로기준법」 제60조 외에	<u>접종을 받는</u>
그 입원 또는 <u>격리기간</u> 동안	
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. 이 경	- <u>격리기간이나 대통령령으로 정</u>
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	하는 기간(예방접종 받은 경우
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	<u>에 한정한다)</u>
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	
다.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